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 표준업무처리요령

제정 2008. 5.(2008. 7. 1. 시행)

개정 2009. 11. 30.

개정 2010. 9. 17.

개정 2012. 3. 20.

개정 2013. 2. 20.

개정 2013. 7. 1.

개정 2014. 7. 24.

I. 목적

-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이하 “유학생 등”이라 한다.)의 선발 절차와 학업지도 등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여 대학의 업무처리를 표준화하고, 유학생 등의 안정적인 국내 유학을 지원한다.

II. 적용대상

-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제2항제6호,제7호에 따른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으로서 국내의 대학 및 대학원에서 수학하거나 연구를 하는 학생
 - 단, 야간대학 및 원격대학의 유학생 등에 대해서는 입국절차(Ⅲ-1)에 관한 내용은 적용하지 않는다.
-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으로서 국내 대학이나 대학원의 정규 과정·연구과정 외에 대학부설 어학원에서 한국어를 습득하고자 하는 어학연수생

III. 유학생 등 선발

1. 입국 절차

- 입학허가서 신청 → 표준입학허가서 발급 →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신청 →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 사증발급 신청 → 사증발급 → 입국
 - ※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신청은 초청자가 대리할 수 있으며, 대학의 장 또는 대학의 장이 지정하는 유학생 관리부서의 장 명의로 신청 가능

2. 대학의 입학허가

가. 입학허가 시 심사사항

- 수학능력
 -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학력 이수 여부
 - 한국어 구사 능력
 - 대학 자체 기준에 의한 수학능력 등
- 재정능력
 - 등록금, 생활비 등 1년간의 평균 소요경비 이상의 재정능력 등
 - ※ 1년(어학연수의 경우 6개월) 미만 체류허가자는 허가기간 만큼 재정능력 입증으로 가능
 - ※ 재정능력 관련 사항은 '유학생 시증 발급 및 체류관리 지침'(법무부) 개정 시마다 즉시 반영

나. 입학허가신청 제출서류

1) 수학능력 입증서류(예시)

- 입학지원서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 성적증명서
- 한국어능력 성적증명서
- 작품 또는 성과물(예 · 체능계) 등
 - ※ 수학능력 입증서류는 대학의 장이 자율결정

2) 재정능력 입증서류

<외국인 유학생>

- 일반 학생
 - 등록금, 생활비 등 1년간의 평균 소요경비 이상의 본인 또는 재정보증인의 은행 등 예금잔고증명서 (1개월 이상 계속 예치) 또는 국내송금 또는 환전증명서
 - 재정보증인의 ①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 등록증 ②재산세 과세증명서 ③유학경비 부담 서약서(입학지원서에 포함)
- 각종 장학생
 - 장학금 지급예정 증명서
- 대학간 교류학생
 - 총 · 학장의 초청장 및 학비 면제 확인서

<외국인 어학연수생>

- 은행잔고증명서
 - USD 5,000이상(6개월)의 국내 송금이나 환전 증명서
- 신원 보증서(공증 불요)
 - 학비 등 체류 중 필요한 경비지불 능력을 입증하지 못하거나 법무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

다. 입학허가 심사

- 각 대학은 지원자가 제출한 서류 검증 등을 통하여 수학능력과 재정능력을 심사하여 합격 여부를 결정한다.
- 객관적인 기준 설정 등 실질적인 심사를 통해 입학허가를 강화한다.
-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 아래와 같이 일정 기준이상의 한국어 또는 영어 능력 수준자의 선발을 권장한다. 단, 한국어연수기관에 입학하는 어학연수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는다.

[4년제 대학, 대학원, 대학원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등]

- 한국어능력시험(TOPIK) : 3급 이상 입학, 졸업 전까지 4급 이상 취득
- 영어능력시험 : TOEFL 550, CBT 210, iBT 80, IELTS 5.5, TEPS 550점 또는 그에 상응하는 점수의 국가공인민간영어능력평가시험
- 일부과정(교환학생, 정부초청장학생, 외국정부지원 장학생, 예체능학과 입학생, 이공계 대학원 입학생)의 경우 기준 완화 가능

[전문대학, 전문학사 학위과정]

- 한국어능력시험(TOPIK) : 3급 이상 입학
 - 영어능력시험 : TOEFL 550, CBT 210, iBT 80, IELTS 5.5, TEPS 550점 또는 그에 상응하는 점수의 국가공인민간영어능력평가시험
 - 일부과정(교환학생, 정부초청장학생, 외국정부지원 장학생, 예체능학과 입학생 및 기술직 학과 입학생 등)의 경우 기준 완화 가능
- ▶ (조건부 입학기준 완화) 이공계 입학생(학사, 전문학사)의 경우 TOPIK 입학 기준을 2급으로 완화가 가능하되, 해당 대학에서 입학 후 1년간 250시간 이상의 한국어 연수를 의무 제공하여 유학생의 한국어능력 배양 및 학업·생활 적응을 지원해야 한다.(‘15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

- 단, 2급을 소지한 입학생이 입학 후 첫 학기 중 3급을 취득할 경우 연수 시간은 1년간 120시간으로도 충족
- 대학의 유학생 입학규정, 학사관리규정 등에 한국어연수 시행내용 포함 필요
- ▶ (제한적 졸업기준 완화) '14학년도 2학기부터 대학별로 이공계열 중 한국어 능력이 상대적으로 덜 요구되는 학과를 20% 미만으로 지정 하여 TOPIK 졸업 기준을 3급으로 완화 가능
- 대학의 유학생 학사관리규정 등에 기준 완화 학과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 인정

라. 입학규정 관련 기타 사항

- 각 대학은 외국인 유학생 입학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유학생을 선발하도록 한다.
-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선발 기준상의 조건(예: 한국어 성적 우수 등)이 없는 입학생 일률적 학비감면은 지양한다.
- 대학은 유학생 등의 입학시 보증금 예치를 지양한다.
- 대학은 비공식 네트워크를 통한 유학생 선발, 유학원 위탁에 한한 유학생 선발을 지양한다.

IV. 유학생 등 학업지도

1. 등록 등

- 입학이 허가된 자는 소정의 등록 절차를 필하도록 지도한다.
- 등록을 필한 학생은 수강신청 또는 한국어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배치한다.

2. 유학생 등의 학업 성취도 증진 노력

- 한국어 능력평가가 필요한 경우, 국립국제교육원이 시행하는 '한국어 능력시험(TOPIK)'을 활용하도록 한다.
- 한국어 연수생이 한국어를 단기간 동안 쉽게 습득할 수 있도록 수준별 강좌 및 교재 개발에 힘쓴다.
- 학업 성취도가 저조한 학생에 대하여는 추가적인 보충학습 기회를 제공하여 목표한 성취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특히 외국의 12년 미만 학제 이수자 등 수학능력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보완교육 실시 등 학력 신장을 위한 다양한 방법 실시를 권장한다.

- 한국어연수 프로그램 또는 기관을 운영하는 경우 과정수료, 출석, 제적, 장학, 교원 및 등록금 환불 등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하도록 한다.
- 유학생 등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한국어 강사는 한국어 교원 유자격자 채용을 권장한다.
 - ※ 국어기본법령 : 한국어교원 자격 부여(1~3급)
- 유학생의 졸업을 위한 한국어과정 수업 이수를 졸업학점으로 대체 운영하는 것을 지양한다.
 - 한국어연수 수준의 한국어 말하기, 듣기, 쓰기, 읽기 수업을 교양 또는 전공과목으로 이수(졸업학점 인정) 하는 것을 제한한다.

3. 유학생 등을 위한 강좌 개설

- 외국인 유학생을 위해 영어를 비롯한 주요 외국어로 진행되는 강좌 개설에 힘쓴다.
 - 자체적으로 외국어 강좌 개설 여건이 미흡한 경우, 인근지역 대학 간 컨소시엄을 형성, 분담개설하거나 교류 수강하는 방안 등을 강구한다.
- 한국어 연수생이 한국 문화를 경험함으로써 한국어를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 있도록 풍부한 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한다.
 - 전통문화 공연 관람, 문화유산 답사 등의 다양한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개발·제공한다.

V. 유학생 등 지원

1. 숙박

- 각 대학은 외국인 유학생의 편의를 위해 외국인 우선 제공을 위한 기숙사 확보에 힘쓴다.
- 외국인 우선 제공을 위한 기숙사 시설 확보가 곤란한 대학은 국내 학생용 기숙사 시설의 일정 비율을 외국인 유학생에게 배정한다.

2. 유학생 등 상담활동

- 대학의 국제화 및 유학생 등 유치확대를 위해 각 대학은 여건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국제교류 전담기구를 지정하고 국제교류 및 유학생 등의 전담직원을 두도록 노력한다.

- 유학생 등이 50명 이상인 경우 전담직원 1인 이상 배치하고, 유학생 등이 200명 이상인 경우 전담조직(Int'l Office)을 설치하도록 한다. 전담조직의 경우 기존 부서의 활용도 가능하다.
 - 전담직원 : 유학생 등의 지원·관리(상담) 업무를 주요업무로 담당하는 직원
 - 전담조직 : 유학생 등의 지원·관리(상담) 업무 총괄(기존 부서 활용 가능) 부서
 - 전담기구를 중심으로 교직원과 학생에게 학내 문화의 글로벌화를 위한 자체 교육을 실시하여 유학생 등에 대한 불필요한 편견과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 해당 업무 관계자는 '유학생 사증 발급 및 체류관리 지침'(법무부) 등 관련 제도의 충분한 이해를 통해 유학생 등 지원·관리에 노력한다.
 - 정기적인 유학생 등의 상담활동을 통하여 학업 및 생활 등에 관한 고충을 해소하도록 노력한다.
 - 신입생 사전교육 시 유학생 등에게는 학교시설 이용과 교내 동아리 활동 등에 대해 별도의 안내교육을 실시하고 국내생활에 관한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 대학은 안전한 유학생활을 위하여 유학생 등이 의료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한다.(15학년도 1학기부터)
 - 보험가입 유형은 제한하지 않으나 대학은 보건복지부의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을 포함하여 의료 혜택을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을 적극 안내
- * (특례사항) 기존 유학생(D-2 소지자) 중 '15년 3~4월(2개월) 중 동 보험에 가입하는 자는 입국 시부터 소급되는 납부분을 면제받을 수 있으며, 해당 내용은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 ※ 단기연수생(C-3 사증 소지자)도 기존과 같이 가입 권장대상

3. 민간 친선 활동지원

- 유학생 등에게 민박(Homestay)을 주선하여 한국 문화와 관습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킨다.
- 유학생 등에게 초·중·고교나 지역사회외 국제이해 교육을 위한 자원봉사 기회를 주선하여 상호교류 기회를 확대한다.

4. 장학제도

- 각 대학은 유학생 등 유치 확대를 위해 각종 장학제도를 운영하도록 노력한다. 단, 모집단계에서의 일률적 학비감면은 지양한다.
- 각 대학은 정부, 지방자치단체, 학술단체 및 지역 내 기업으로부터 유학생 등을 위한 각종 장학금을 유치하여 국가 간 교류협력 증진에 힘쓴다.
- 각 대학은 유학생 등의 소속 국가와 유관한 국내 기업으로부터 장학금 유치에 힘쓴다.

5. 유학생 등 취업활동 지원

- 유학생 등에게 건전한 시간제 취업(아르바이트)을 알선하고 법무부의 시간제 취업제도 운영에 대하여 충분히 안내하여 유학생 등이 취업을 위해 학교를 이탈하는 사례가 없도록 한다.
- 외국인 유학생의 졸업 후 취업을 지원하여 한국 유학 선호도를 제고하고, 기업의 글로벌 인재 채용을 지원한다.

6. 한국유학종합시스템 활용

- 외국인 유학생의 체계적인 관리·지원을 위해 국립국제교육원이 개발한 “한국유학종합시스템”을 활용하여 입학신청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 ※ 국립국제교육원 시행 유학생 사업 및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역량 인증 대학 중 온라인 입학신청 서비스 적용을 희망하는 대학과 수요조사를 통해 선정된 대학에 우선 적용하고 점진적으로 모든 대학에 적용
-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역량 인증대학은 동 시스템 내의 ‘인증대학 홍보페이지’에 교육부가 게재 요청하는 양식에 따라 홍보 자료 등을 등재할 수 있다.
- 동 시스템 내의 ‘유학생 지원 프로그램’ 정보 공유 페이지에 대학 등 기관 별 프로그램을 등재하여 기관 간 유학생 지원을 위한 정보 공유 및 협업을 위해 활용한다.(14년 중 개통 후)

VI. 유학생 등 유치 홍보

- 대학 인적·물적 국제교류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대학 간의 협력과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다양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데 힘쓴다.

- 각 대학은 유학생 등 유치 확대를 위해 학교 홍보자료 등을 제작하여 국외에 보급하도록 노력한다.(인터넷 홈페이지 등)
- 각 대학은 외국의 자매결연 대학을 중심으로 학교홍보에 힘써 실질적인 교류가 활성화 되도록 한다.
- 국내 유학을 희망하는 외국인들을 위해 국립국제교육원이 시행하는 “한국어 능력시험”과 국립국제교육원이 개발한 “한국어 교육 시스템 (KOSNET)”을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 ※ KOSNET(Korean Language Study on the Internet) : 인터넷을 통한 한국어 학습자료 제공
- 각 대학은 유학생 등이 특정국가·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유치국가 다변화를 위해 노력한다.

VII. 서식

1. 표준입학허가서(Certificate of Admission)

※ 본 서식 수정·보완 불가 (첨부 1 참조)

2. 입학지원서(Application for Admission)

※ 본 서식은 각 대학의 실정에 따라 수정·보완하여 사용가능 (첨부 2 참조)

VIII. 시행

- 이 지침은 시행 시점이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보 즉시 시행하되, 표준입학허가서 양식(첨부 1)은 법무부 유학생정보시스템(fims.hikorea.go.kr) 반영 이후부터 적용한다.

【첨부 1】 표준입학허가서 양식

표준입학허가서 (Certificate of Admission)

표준입학허가서 번호(Certificate of Admission No.) :

이 서식은 국내 대학의 유학생 입학담당 책임자가 작성하고 총(학)장의 직인을 찍어야 함(서명 또는 날인도 가능)
(This page must be completed by a designated school official in Korea and signed by the President)

1. 성(Family name) 이름(Given name)

* 한자(漢字) 성명의 경우(중국, 일본 등) 한자 병기

출생국가(Country of birth) 생년월일(Date of birth)

국적(Country of citizenship) 성별(Gender)
 남성(Male) 여성(Female)

여권번호(Passport No.) 입학허가번호(Admission Number)

이메일 주소(E-mail address)

2. 학교명(School name) 및 사업자등록번호(Registration Number)

※ 사업자등록번호가 없을 경우 학교고유번호 기재

학생입국시 통보할 학교담당자

(School official to receive notification of student's arrival in Korea)

성명(Name) _____ 직위(Title) _____

전화번호(Telephone) _____

학교주소(School address)

3. 이 입학허가서를 상기인에게 발급함(해당란 표시하고)을 채울 것)

This certificate is issued to the student named above for :

(Check and fill out as appropriate)

- a. 신입학(Initial attendance at this school)
b. 재입학 또는 복학(Continued attendance at this school)
c. 편입학(Transfer)
전 재적교명(Transferred from _____)
d. 기타(Others) _____

4. 재학중이거나 등록할 과정 (한 곳에만 표시할 것)

Level of education the student is pursuing or will pursue in Korea

(Check one)

- a. 전문학사과정(Associate's) b. 학사과정(Bachelor's)
c. 석사과정(Master's) d. 박사과정(Doctor's)
e. 교환학생 학점취득과정(Exchange student's credit)
f. 기타(Other) g. 어학연수과정(Language Training)
운영분기(tem), 주당 수업일수(class days per week),
주당 총 수업시간(class hours per week)

10. 지원자 확인 : 본인은 본인의 입학에 관한 상기의 모든 조건에 따를 것을 동의하며, 상기 내용이 모두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합니다.

본인은 또한 상기 학교에서 _____ 의 이수 목적만을 위해 한국에 입국하여 일시체류하고자 함을 확인합니다.

Student Certification : I have read and agreed to comply with the terms and conditions of my admission.

I certify that all information provided on this form is true and correct. I certify that I seek to enter or remain in Korea temporarily, and solely for the purpose of pursuing a _____ course of study at the school named above.

본인 서명
Signature of student

이름
Name of student

연월일
Date

11. 총(학)장 확인 : 본인은 법적 책임하에 상기 1항에서 9항까지의 모든 내용이 사실과 상위없음을 증명합니다. 학생의 지원서와 성적증명서 및 재정능력 증명서 등 모든 서류를 심사하고 검토한 결과 상기학생의 자격이 본교의 입학허가서 기준(수학능력 및 재정능력)에 합치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School Certification : I certify under penalty of perjury that all information provided above in items 1 through 9 is true and correct. After reviewing and evaluating the student's application, transcripts or other records of courses taken and proof of financial responsibility, the school has determined that the above named student's qualifications meet all standards for admission to the school.

발급일(Date issued)

President, _____

대학교 총(학)장
University(College)

직인 (stamped)

5. 상기 학생에게 본교의 _____ 학과 _____ 개월 과정 입학을 허가합니다.
_____ 까지 등록을 필하여 줄 것을 요망하며, _____ 까지 학업을 마쳐야 합니다.

The student named above has been accepted for a _____ month course of study at this school, majoring in _____ .

The student is expected to report to the school no later than _____ and complete studies no later than _____ .

6. 한국어 구사능력(Korean proficiency)

- 한국어구사능력 기준 도달
(The student has the required Korean proficiency.)
 한국어 능력기준 미달. 별도연수 부과예정
(The student is not yet proficient; Korean instructions will be given at the school or other institution)
 한국어 구사능력 불요 : 이유(Korean proficiency is not required because)

7. 본교는 상기학생의 1년(2학기)간(00간)의 평균 소요경비를 아래와 같이 산출합니다.(This school estimates the student's average costs for an academic year of 2 semesters/00 to be)

a. 등록금(Tuition and fees)	\$ _____
b. 생활비(Living expenses)	\$ _____
c. 기타(Other)	\$ _____
계(Total)	\$ _____

※ 원칙적으로 1년간 평균 소요경비를 산출하되,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교육기간 동안 (예상)경비 산출

8. 본교는 상기학생이 아래 내역과 같이 연간(00간) 소요경비를 조달할 것으로 신고 받았습니니다.

(This school has been informed of the student's means of support as estimated for an academic year of 2 semesters/00.)

a. 본인부담(Student's personal funds)	\$ _____
b. 보증인부담(Sponsor's support)	\$ _____
c. 장학금(Scholarships: sponsored by)	
c-1. 한국정부초청 (Korean Government)	\$ _____
c-2. 대학초청 (University)	\$ _____
c-3. 자국정부과건(Government of home country)	\$ _____
c-4. 기타 (Others)	\$ _____
d. 기타(Fund from other sources)	\$ _____
계(total)	\$ _____

※ 원칙적으로 1년간 평균 소요경비를 산출하되,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교육기간 동안 조달방법 신고

※ 보증인부담시 보증인 인적사항(Sponsor's information)

성명(Name) : _____
관계(Relationship) : _____

9. 비고(Remarks) :
